

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 연혁

- 2012년 7월 12일 제정
- 2015년 11월 12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만든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규정을 정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보급·확산과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축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11. 12. 개정>

제3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시도축구협회, 연맹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
2. 협회에 등록된 각급 축구팀 및 그 소속 선수, 지도자, 임원
3. 심판 및 기타 협회의 행정 관할 범위에 있는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2015. 11. 12. 개정>
2.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 사례(폭력·성폭력)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2015. 11. 12. 개정>
3. 선수의 등록과 이적 및 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2015. 11. 12. 개정>
4. 페어플레이 및 축구 정신의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5. 위 각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3인 이상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2015. 11. 12. 개정>

-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한다.<2015. 11. 12. 개정>
-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 ① 위원장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소집)

위원장의 필요 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 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제외)

위원 본인과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신고 및 조사)

- ①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를 당하거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2015. 11. 12. 개정>
- ② 선수 등록과 이적에 따른 분쟁 및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2015. 11. 12. 개정>
- ③ ①②항에 대하여 시도협회, 가맹단체는 1차 조사 및 처리기관이며 협회는 2차 처리 기관이다.<2015. 11. 12. 개정>
- ④ 협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시도협회 또는 가맹단체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2015. 11. 12. 개정>
- ⑤ ④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2015. 11. 12. 개정>
- ⑥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2015. 11. 12. 개정>
-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사안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해당 선수가 소속된 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소환 조사 또는 현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는 조사시 관련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징계)

-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협회 징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를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② 협회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부 칙 (2015. 11. 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